

# 국회기록 인터넷 정보서비스 개선 방안

Improvement Plan for Internet Reference Services of National Assembly Records

이 원 영(Won-Young Lee)\*

## 초 록

이 글은 한국 국회기록의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고찰함으로써 공공기록의 인터넷 정보서비스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학에서의 정보서비스 이론과 외국의회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국회기록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개선방안으로서, 접근정책의 수립, 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선,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의 활성화라고 하는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aims at the fundamental factors needed to make the policy for internet reference service of public records were presented, considering the methods for improvement of internet reference service of national assembly records. For this purpose, reference service theory of recorded informations and examples of foreign congress reference services were analyzed. From the result of analysis, three tasks were proposed as an improvement plan for internet reference services of national assembly records: establishment of access policy, improvement of reference service programs, and activation of communication with users.

키워드: 기록정보서비스, 이용자, 접근정책, 정보서비스 프로그램, 의사소통, 의회기록 인터넷 정보서비스  
reference service of recorded informations, user, access policy, reference service program, communication, internet services of congress records

---

\*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사(winie210@hanmail.net)

- 논문접수일자 : 2004년 12월 1일
- 게재확정일자 : 2005년 1월 13일

## 1. 머리말

기록은 도서와는 달리 그 내용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생산배경(맥락), 그 관리내역 등이 적절한 원칙과 방식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다면 기록의 완전성(integrity), 이용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관리법)은 기록관리의 목적이 기록의 효율적 활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록관리란 기록의 생산과 보관, 이용과 처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업무이며, 그 목적은 기록에 포함된 지식과 정보, 증거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자에게 찾고자 하는 기록 및 관련 주제와 정보에 대한 접점을 제공하는 기록관리활동, 기록을 매개로 한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상호작용을 기록정보서비스(reference service of recorded informations)라고 한다. 기록정보서비스가 기록관리학의 핵심영역으로 등장한 것은 기록의 양적, 질적인 축적, 이용자들의 정보이용 욕구의 급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의 용이성이라는 지극히 현대적인 현상과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 공공기록 정보서비스는 기록관리법에서의 정보공개 기능 및 기록물 이용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정보공개청구권 및 정보공개 의무 및 인터넷에 의한 정보공개 규정, 그리고 “전자정부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의 행정정보공동 이용의 원칙 및 국민생활관련 정보의 인터넷 제공에 관한 규정 등을 기본틀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법규는 기록의 이용 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기록관리법)에 그치고 있거나, 기록

의 행정정보화를 기본개념으로 하는 것(정보공개법, 전자정부법)으로서, 공공기관이 소장한 기록정보를 다양한 이용자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관점은 상당히 미흡하다.

법률 및 제도적인 취약점과는 별도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된다. 비공개 기록을 제외하고 이용가능한 현용, 준현용, 역사기록에 대해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이용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는 이 인터넷을 통한 기록정보서비스의 활성화에 있다. 인터넷을 통한 기록정보서비스는 정보화 사회에 조응하는 가장 보편적인 정보서비스 방식이며, 정보화 기술과 결합하여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발전이 기록의 내용과 생산배경, 관리내역과 같은 속성을 보존, 관리하고 수요자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원칙 및 방법론과 결부되지 않는다면 적절하고 체계적인 기록정보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공기록의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대한 기록관리학적인 관점에서의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까지의 공공기록 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도적인 관점에서의 연구 이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글은 한국 국회기록의 인터넷 서비스 개선 방안을 고찰함으로써 공공기록의 인터넷 정보서비스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학에서의 정보서비스 이론에 대한 고찰과 의회기록 정보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의회기록은 어느 국가에서든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기록으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공공기록이다.

한국의 의회기록, 즉 국회기록의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생산으로부터 이관, 선별, 보존 및 정보제공 시스템 설계에 이르기까지 그 현황에 대한 분석과 기록관리학적인 원칙 및 방법론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세세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정된 지면에서 다루기에는 광범위한 과제이므로, 여기에서는 국회기록의 인터넷 정보서비스 단계에 국한하여, 어떤 원칙과 방법론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이 글에의 국회기록이란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현용, 준현용, 역사기록을 모두 포함하며, 그 형태에 있어서는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전자적 형태의 전자기록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 2. 기록정보서비스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1 기록의 이용

기원전 40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류의 기록관리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록의 이용 및 서비스는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 보편화된 관념이고 현상이다. 공공기록의 이용에 관한 관념은 근대적인 기록관리 체제의 형성과 더불어 발전되어 왔다. 프랑스 혁명의 주요한 수확물의 하나로서, 공공기록은 공공의 재산이라는 인식이 대두하고, 대중들이 봉건적 권리,

재산관계의 청산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공공기록을 찾아 볼 수 있는 접근의 원칙이 선언되었다. 기록에 대한 대중의 권리가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이전에는 기록의 열람은 사실상 엄격히 통제되고 제한되었다. 그 이유 기록이 일차적으로 기록 생산자의 필요에 의해 존재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기록의 이용은 기록을 통제하는 기관에 한정되었다. 예외적으로 민주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서는 열람 규칙이 다소 완화되었고 19세기 유럽에서는 역사학자들에게 공공기록을 점차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현대에 이르러서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을 제거한 기술적 발전에 의해 정보의 대중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가운영에 관한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국민 스스로 행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었다. 이에 국민들의 공공기록에 대한 이용의 권한은 이른바 “알 권리”라는 관념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으로 구체화 되었다.<sup>1)</sup>

기록의 이용은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볼 때 생산기관에서 활용 중인 현용 및 준현용 단계에서의 실제적 이용(actual use, 현재적 이용)과, 주로 외부 이용자들, 즉 자료에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할 것이고 이용해야 할 모든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비활용 단계에서의 실제적 및 잠재적 이용으로 이루어진다(Dowler, Lawrence 1988, 78). 기록의 이용은 이용자의 유형으로 볼 때, 기록의 생산자, 기록을 이용하여 연구하는 연구자, 그리고 기록에서 정보를 추출하거나 검색도

1) 미국의 정보자유법(1966)이 최초이며, 이후 다수의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그 자체에 대해서 법률상 명문화된 조항은 없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헌법 21조와 10조가 그 근거조항으로 간주된다. 즉, 자유로운 의사표명(발표의 자유)과 전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며,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의사형성을 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 수집,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알권리의 보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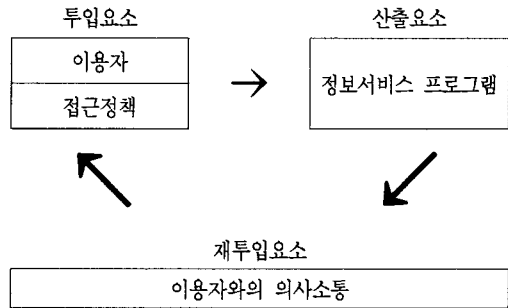
구, 참고 자료의 작성, 또는 전시를 위해 이용하는 기록관리전문가(archivists)가 주요 이용자이다(Conway Paul 1986, 395).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용자는 기록관리기관을 방문하지 않으면서도 기록자료 및 정보를 간접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일반 대중이다(Conway Paul 1986, 396).

## 2. 2 기록정보서비스의 구성요소

기록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자는 여기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접근이란 문서 또는 정보를 찾거나 이용하거나 접근하는(approaching) 권리나 기회나 수단(Bellardo Lewis and Bellardo Lynn Lady 1991, 1), 또는 기록자료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연구하기 위한 연구자(정부생산자 및 접수자 이외)의 권한과 권리를 의미한다(Robbin Alice 1986, 351). 기록정보서비스는 이용자의 접근에 대해 그 접근을 제공하는 기록관리활동이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체계이다. 이를 다음의 <표 1>과 같이 도표화할 수 있다. 즉 기록정보서비스가 성립, 유지되기 위해서는 투입, 산출, 재투입이라는 요소가 지속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투입요소로는 정보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의 욕구와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정보서비스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정책(접근정책)이 작용한다. 산출요소는 이용자의 요구와 접근정책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고 구체화된 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재투입요소는 정보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과 여기에 대한 제공자의 대응, 즉 의사소통을 통해 새로운 투입요소가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기록정보서비스체계는 이용자의 요구와 접근정책, 정보서비스 프로그램, 의사소

통이라는 요소가 연속적, 순환적으로 작용하는 체계이다.

<표 1> 기록정보서비스 체계



### 2. 2. 1 투입요소

이용자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체계일수록 더 적절한 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유형과 특성, 선호하는 정보, 이용율, 이용하는 태도와 방법, 정보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 등은 기관이 이용자의 관점에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유념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접근정책은 현행법이나 기록 소장기관의 기록관리정책에 기초하여 제정된 성문화된 정보서비스 정책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식의 접근을 제공하고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안내하며, 기록관리기관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수립된다(Pugh Mary Jo 설문원 역 기록정보서비스 2004, 117). 이 접근정책은 자료에 적용되는 규정, 비밀 및 사생활 보호 자료, 기탁자에 의해 요청된 접근의 제한, 정보서비스의 이용자(고객), 평등한 접근, 접근의 수준, 소장자료에 대한 통제, 자료의 물리적

조건, 자료의 보안, 요금 등(McCausland Sigrid 1993, 275-279)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사생활권), 비밀유지, 공공의 알 권리와 접근의 형평성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특히 프라이버시와 알 권리 사이의 균형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Alice Robbin 1986, 368).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기록 정보서비스는 기록의 속성, 제공방식이 전통적인 종이 기록과 다르기 때문에 일부 다른 요소들이 추가된다. 즉 개인정보 제공의 금지, 저작권 제한, 이용제한 및 허가, 인용 규정 등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이용하는 정보의 확인(식별) 책임과 문서의 진본성, 보안소프트웨어의 채택과 같은 정보식별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설명이 필수적으로 추가된다.

### 2. 2. 2 산출요소

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은 기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록 및 기록의 이용과 관련된 지적인 정보들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기록관리기관 자체에 관한 정보, 소장자료 및 소장자료에서 추출한 정보, 생산자에 관한 정보, 다른 기관이나 정보원으로서의 조회안내 등이 포함된다. 정보화 기술 및 전자커뮤니케이션의 발달에 의해 자동화,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유통시스템이 구축되어 인터넷을 통한 정보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다. 즉 종래 물리적 접근에 의해서만 이용 가능했던 소장 자료에 관한 정보, 기관 내부의 인벤토리, 등록부, 카드목록, 색인, 자체 제작 데이터베이스 등의 검색도구와 사진 및 녹음 테입과 같은 비문자 자료까지 자동화 데이터베이스

내에 표준화된 방식으로 기술(Hensen, Steven L 1986, 31-40)되고 인터넷으로 열람, 출력할 수 있다. 아울러 주제별, 기능별, 형식별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가 개발되어 기관 간에 그리고 국가적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이용자 프로그램도 점차 가상공간을 통한 체험으로 대되고 있다.

### 2. 2. 3 재투입요소

재투입요소는 이용자가 정보서비스를 제공 받은 이후 제기하는 추가적인 요구와 질문, 불만, 조언 등에 대한 응답, 이를 통한 이용정보의 수집 등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과정이다. 의사소통은 이용자와 접근정책, 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을 연결시켜 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정보서비스 체계의 질적인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인터넷 정보서비스에서의 의사소통은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질문과 답변, 행정적인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질문답변은 질의 형성, 해답제시, 그리고 정련과정(Pugh Mary Joe 설문원 역, 2004, 85)을 거치는데, 전자메일을 통한 제공자와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표준화된 포맷에 의한 질문의 작성, 제공자가 제작한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행정적인 상호과정은 인터넷 정보이용을 위한 인증의 신청과 허가, 저작권 및 인용에 관한 안내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장에서 검토한 기록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외국 의회기록 및 한국 국회기록 정보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기로 한다.<sup>2)</sup>

2) 다만 정보서비스 체계의 투입요소인 이용자 요구는 인터넷상으로 조사, 분석할 수 없는 요소였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3. 외국 의회기록 인터넷 정보서비스 사례와 국회 현황<sup>3)</sup>

#### 3. 1 미국 의회기록 정보서비스

미국 의회기록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상원(<http://www.senate.gov>)과 하원(<http://www.representative.gov>), 의회도서관(<http://www.loc.gov>) 등 의회 소속 기관 그리고 국립기록관리청(NARA, <http://www.archives.gov>)의 의회아카이브센터(Center for Legislative Archives)이다. 상원과 하원 및 의회 소속기관은 조직상으로는 독립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기관이지만, 의회도서관이 운영하는 입법부 인터넷정보원인 THOMAS(<http://thomas.loc.gov>)라고 하는 명감(directory)에 링크되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의회 아카이브 센터의 정보서비스는 국립기록관리청의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v/records\\_of\\_congress/about-the-cla](http://www.archives.gov/records_of_congress/about-the-cla))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 3. 1. 1 상원 기록정보서비스

###### 3. 1. 1. 1 접근정책

상원에서는 기록의 인터넷 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접근정책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규칙 및 정책”과 “프라이버시 정책”이 있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규칙 및 정책”은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모든 정보의 제공자와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이용 규칙이다. 여기에 규

정된 사항은 정보게재의 권한과 절차, 감독의무, 게재 또는 링크 금지 사안, 이용 기한의 제한, 도메인 및 네임설정의 기준, 게재된 공공정보의 배포 또는 복제허가 및 서명/사진/이미지의 인증의 요구, 사이트 관리를 위한 정보의 통계학적 수집 및 소프트웨어 사용, 사이트 보안과 이용자들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불법적인 법률에 대한 제재와 검색의 목적을 위한 데이터 수집, 국립기록청의 지침에 의한 원 데이터의 정규적인 파기, 불법적인 시도의 금지와 처벌, 의문이나 조언에 대한 요청 등이다. “프라이버시 정책”에는 정보서비스의 목적(공공목적, 공공정보의 서비스)과 이를 위한 절차, 감독 의무, 게재 또는 링크의 금지와 이용 제한 요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용 규칙 및 정책, 이용자 정보의 활용 목적과 불법적인 이용시의 처벌규정 등이다. 즉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법적, 행정적, 기술적 조건들을 명시한다.

###### 3. 1. 1. 2 정보서비스 프로그램

상원역사부(The Historical office) (<http://www.senate.gov/artandhistory/history/common/generric/Senate...>)는 상원기록에 접근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을 지원하며, 자동화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주요 정보서비스는 역사기록에 대한 안내와 중요한 사건, 선례, 일자, 통계, 그리고 현재 및 과거의 상원 활동에 관한 역사적인 비교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의 주요 이

3) 외국의 의회기록 인터넷 정보서비스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전자정부가 발전된 미국, 영국, 호주 및 캐나다 의회 웹사이트를 검색하였다. 그런데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미국 및 영국에 비해서 그 내용과 규모가 대단히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사례만을 검토대상으로 하였다.

용자는 상원의원과 직원, 언론매체, 학자들과 일반 국민들이다. 여기에서 링크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역사기록 및 그것을 이용한 정보에는 (1) 예술과 역사에 관한 뉴스(예술 및 역사적 기사, 현재인 사건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정보제공) (2) 상원의 기원과 발달(상원의 발전에 관한 역사 에세이) (3) 기타 역사적 회의록(연대별, 주제별, 인물별 장소별, 사건별로 조직화) (4) 구술사 프로젝트(의회의 변천사에 관한 인터뷰) (5) 인물(의회 서지 디렉토리에 온라인으로 연결) (6) 역사적 통계(상원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통계표와 도표) (7) 사진(전 현직 상원의원의 사진과 삽화, 뉴스 사진 등 상원의 역사를 기록하는 약 35.00점의 그림, 슬라이드, 필름에 관한 정보, 이미지) (8) 금주의 상원 역사(주별, 연도별 상원 역사를 추적한 일화 모음) (9) 상원기관 서지정보(1789년 이래의 도서, 논문, 공문서에서 인용된 600여 항목) (10) 상원 아카이브즈에 관한 안내(상원의 공식기록과 전직 상원의원의 사적인 서류 수집물에 대한 정보) (11) 간행물 등이다. 이 정보들을 검색하기 위한 검색도구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고 각 세부 목록을 클릭하여 접근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이트는 의회도서관의 온라인 서지목록, 국립기록청의 의회 아카이브즈 센터 및 “Records of Congress”로, 국립간행물제작소(GPO) 등과 링크되어 의회 역사기록에 대한 심화조사를 안내한다. 그 밖에 하원 사무처(The Office of the Clerk)의 교육 web site인 “Kids in the House”(http://clerk.house.gov/eduRsrcs/index.html)에서는 아동과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소장 자료의 이용에 관한 안내, 의회 역사 및 입법과정에 관해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자료와 “Glossary”(단어를 찾고, 용어의 전체 리스트를 검색할 수 있는 용어사전)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미국 의회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는 이와 같이 상원의 역사와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목록화, 미지화, 2차 자료로 가공하여 편리하고 생생하게 접근하고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3. 1. 1. 3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상원 기록정보 이용자가 기록 및 찾고자 하는 정보를 찾지 못한 경우, 해당 분야별로 또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도록 담당자와 전자우편 주소를 제공한다. 상원의 예술품에 대한 질문은 상원큐레이터 사무실이나 큐레이터 전자메일로, 역사정보 및 역사적 사진 수집물에 대해서는 상원 역사실(Senate Historical Office)로 문의하도록 되어 있다. “Contact Us”라는 메뉴에서는 웹사이트에 게재된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나, 조언의 제공을 안내한다.

### 3. 1. 2 의회아카이브즈 센터

한편 상원 및 하원의 기록은 상원 및 하원의 재산이지만, 영구보존의 가치가 있는 기록들은 의회 아카이브즈 센터에 이관되어 보존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 3. 1. 2. 1 접근정책

의회 아카이브즈 센터는 연구 조사를 위한 온라인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의회기록에 대한 접근 및 의회기록의 인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접근규정인 “Privacy & Use”에서는 (1) 개인정보 제공의 금지(개인 비밀정보의 제공 금지, 통계적 분석 및 기술적인 개선을 위한 목적

에 한정된 이용자 정보의 수집 등) (2) 승인의 거절(NARA의 통제를 받는 어떤 웹사이트에서도 특정한 상업적 업무, 상품, 과정 또는 서비스에 대한 참고는 승인되지 않음) (3) 저작권, 제한, 허가(저작권법은 도서관과 아카이브즈에서 사적인 연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사진복제 또는 복제에 대한 권한을 제공함) (4) 정보의 보증 (5) 바이러스 보호(컴퓨터 시스템의 바이러스 보호 소프트웨어와의 사용과 정기적인 업데이트) (6) 보안 소프트웨어 채택(정보의 불법적인 게재나 변경, 훼손을 식별하기 위한 감시 기능) 등이다. 소장물에 대한 접근과 그것의 인용에 관한 상세한 안내가 제공된다.

### 3. 1. 2. 2 정보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자는 의회기록의 이용 지침인 “연구자를 위한 정보”(접근규정과 인용법)를 이용할 수 있다. 의회기록 아카이브즈 센터가 제공하는 의회기록 및 의회기록에서 추출한 정보로는 (1) 입법기록의 검색도구(하원 및 상원기록, 위원회 기록, 영구보존 기록 목록, 연방정부 간행물 목록) (2) 특수기록물(구술기록, 조사인터뷰, 정치풍자 만화) (3) 온라인 자료(기록관리기관에서 수집한 의회 수집물 색인) 등이다. 소장물의 색인은 소장기관, 소장 조직의 명칭별로 정리하고, 의원명은 상원 또는 하원별로 재직기간에 의해 목록화되며, 외부의 보존기관에 있는 수집물에 관한 상세기술을 제공한다. 의회기록에 대한 검색도구는 상원, 하원별로, 연대별로, 위원회별로 제공되며 여기에는 간략한 가이드가 포함된다. 그 밖에 기록관리기관에 소장된 의회 수집물의 검색을 위해 기관별, 주별, 의원명별로

알파벳순의 색인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 3. 1. 2. 3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질문과 여기에 대한 답변, 및 재질문이라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의회 아카이브즈 센터는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의 하위 메뉴로서 조사 및 심층조사를 위한 검색포맷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용자는 “Contact Us” 메뉴를 통해 질문, 조언, 불만제시를 위한 포맷을 사용할 수 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미국 의회기록에 대한 접근규정은 의회 아카이브즈 센터에서 상세히 제공하고, 의회의 영구보존기록을 관리하는 국립기록청 홈페이지를 통해 방대한 의회기록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인터넷 정보서비스는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미국역사, 민주주의의 발달에 관련되는 역사정보들에 대한 목록, 요약과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와 제공자는 “Contac Us”, “FAQ” 전자메일을 통해 편리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 있다.

### 3. 2 영국의회 기록정보서비스

영국의회(<http://www.parliament.uk>)에서 기록정보서비스를 관할하는 부서는 의회아카이브즈(Parliament Archives)이고, 의회의 간행물과 역사기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의회출판및아카이브즈(Parliamentary Publications and Archives)이다([http://www.parliament.uk/parliamentary\\_publication\\_andarchives/pa](http://www.parliament.uk/parliamentary_publication_andarchives/pa)).



### 3. 2. 1 접근정책

의회기록에 대한 접근정책은 “정보자유법과 기록관리”, “저작권과 이용”, “기록의 이용제한”에 제시되어 있다. “정보자유법과 기록관리”는 정보자유법(2000) 46항의 “기록관리에 관한 실무법전”을 근거로 한다. 정보자유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 일반적인 접근권을 제공하며, 2005년 1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강제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출판하거나 출판하고자 하는 정보를 분류해야 하고,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출판하고자 하는지, 정보에 대한 요금이 청구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신뢰할만한 기록이 생산되지 않은 경우, 필요로 할 때 찾을 수 없는 경우, 보존이나 파기를 위한 정리가 부적절한 경우이다. “저작권과 이용”에 의하면, 모든 의회 저작권은 보호되며, 이용자는 개인적인 이용을 위해 원문을 내려받거나 프린트할 권한이 있다. 기타의 복제는 인증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회 웹사이트에 있는 공식적인 간행물은 이용이 가능하다. 기록의 복제나 인용을 위해서, 그리고 적절한 승인을 위해서는 기록관리부서의 허가가 필요하다. 기록의 인용에 대한 표준포맷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인쇄작업과 논문작업에서 상원기록부서의 보관하에 있는 문서 인쇄작업이나 왕복 서신에 인용할 때에는 표준포맷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이용자는 또는 기록이 이용될 작업의 발췌인쇄 또는 다른 복사본을 기록관리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하원 도서관 저작권 조항에 의하면, 사적인 연구, 의회업무, 조사, 비사업적인 용도, 교육적 용도로 파일을 내려받거나 인쇄할 경우에는 무

료이다. 원문 또는 원문의 핵심적인 부분의 복제는 하원 도서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용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조사실 관리자나 전화, 전자메일로 문의해야 한다. 기록에 대한 접근 및 제한의 법적 근거와 이유, 의무사항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 3. 2. 2 정보서비스 프로그램

영국 상원과 하원의 역사기록관리부서에서는 1497년 이래의 의회와 관련된 수역대의 역사기록을 소장, 관리하며, 이것을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의회기록의 온라인 서비스는 영국 국립기록청 네트워크인 “A2A”(“Access to Archives Web site”)와 링크되어 이용된다. 온라인 목록에 의해 이용 가능한 기록 정보는 (1) 1497년 이래의 의회 법령 (2) 참고번호와 기록의 기술을 제공 (3) 모든 소장물에 대한 catalogue (2005년까지 개발) 등이다. 특히 영국의 인민과 권리, 권력의 역사(국립기록청과 협력하여 구축된 웹사이트에서 제공), 죽음의 증명서(The Death Warrant) 등 중요한 역사기록은 필사본 이미지와 상세기술이 제공된다. “Online Information” 사이트에서는 양원에서 현재 및 과거에 출판된 출판물들을 검색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양원의 데이터베이스, 법령과 의안, 회의실, 위원회, 위원회 보고서, 출판물, 기록관리, 연구논문과 관련된 사이트와 링크된다. 그 밖에 국립 아카이브즈 등록소(National Register of Archives)와 링크되어 관련된 수집물을 소장한 보존소를 소개하고 기타 유용한 링크와 정보를 제공한다. 의회기록의 온라인 검색 목록(Parliamentary Archives) 2004년 가을부터 이용이 가능하고 “A2A”의 검색창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다. 의회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웹사이트인 “Explore Parliament”에서는 뉴스와 게임, 교사들을 위한 자료들, 의회 용어에 대한 유용한 용어집을 제공한다. 하위 메뉴인 “Q n A” 페이지와 “How Parliament Works” 페이지에서는 교사용 편람, 학생용 워크북과 소책자 등 많은 출판물과 비디오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출판물은 대부분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특히 의회자료의 표본(다른 의안의 사례, 공식보고서의 복사본) 등을 교육자료로 제공한다. “Archives in Focus” 사이트에서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역사자료에 관해 교사들에게 권장할 정보, 기록센터를 방문했을 때,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 가문, 지방사 또는 가문사에 대해 역사자료가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 3. 2. 3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정보서비스 이용자는 추가적인 질문을 위해 직접적인 방법(전화, 우편, 팩스 또는 전자메일)을 이용하거나, Contact Us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FAQ”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전화, 우편 전자 메일에 의한 질문답변에서는 이용자를 위해 상세한 조사를 수행할 수는 없으나 특정한 주제에 대한 기록의 범위에 관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사실에서는 식별할 수 있는 자료의 복사본을 기꺼이 제공할 수 있다. “Contact Us”메뉴에서는 Feedback 시스템이 제공된다. 웹사이트의 기술적인 측면이나 정보의 위치를 검색하기 위한 지원요청을 위해 웹사이트의 관리자에게 보내는 “Feedback About the Site”를 이용한다. “FAQ”에서는 사원, 하원 및 사이트 웹마스터에 의해 접수

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질문자료들은 Factsheets, Information List 또는 briefing papers에서 찾을 수 있다. 찾고자 하는 정보를 발견하지 못할 때, 또는 “FAQ”에 추가적인 제안을 할 때에도 이 리스트를 사용한다. 질문을 확인하는 방법도 이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상 검토한 미국과 영국 의회기록 정보서비스 사례를 정리해 보면, 첫째, 의회기록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접근규정, 인터넷 서비스 이용규칙 및 프라이버시 정책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의회기록의 이용과 관련된 법적인, 기술적인 지침과 안내를 제공한다. 둘째, 기록 정보서비스의 주요 프로그램에는 의회 역사기록 및 역사기록에 대한 방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또 여기에 접근하기 위한 목록은 물론, 색인을 비롯한 다양한 검색도구가 자체 제작되어 제공된다. 기타 의회기록에 기초한 다양한 교육자료, 매체들이 개발되어 교실과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와 제공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의 메뉴로 구성하거나, 세부목차, 포맷, 전자메일을 통한 직접 문의 등이 이루어지는 feedback system을 운영한다. 정보검색에 대한 지원과 웹사이트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의사소통 체계를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3 한국 국회 현황

### 3. 3. 1 접근정책

국회기록 인터넷 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접근에 필요한 접근정책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 접근정책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의 하위 메뉴

인 “정보공개”, 국회도서관의 “이용자 마당”의 하위메뉴인 “저작물이용허락협조” 메뉴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정보공개” 메뉴에는 국회가 생산 또는 접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의 공개와 관련하여 그 근거가 되는 법률과 청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소개와 정보공개제도의 관련 법령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회정보공개규칙”의 내용과 정보공개 대상, 정보공개청구방법, 비공개정보 및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정보공개청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소장기록의 목록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 개발 중에 있다. “저작물이용허락협조”는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저작물에 대해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작자 개인으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메뉴이다. 그러나 이용자에 대해 저작권 및 저작물의 인용에 설명이나 안내가 제공되지 않는다.

### 3. 3. 2 정보서비스 프로그램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에는 소속 기관별로 기록 정보시스템이 운영된다. 국회사무처 홈페이지(<http://www.nas.assembly.go.kr>)의 입법자료 데이터베이스(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 국회도서관홈페이지(<http://www.nanet.go.kr>)의 입법지식DB(국회도서관 정보시스템),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http://www.nabo.go.kr>)의 예산정책통합 지식정보시스템(진행중)을 통해 기록정보가 제공된다. 이 시스템들은 입법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의 기록들을 목록화하고, 스캐닝하여 PDF 파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입법정

보통합지식관리시스템은 법률정보, 예산 및 결산 정보, 국정감사 정보, 의안정보, 회의록, 의정 영상자료, 인터넷 의사중계 등 7개의 하위 시스템으로 지원된다. 이러한 국회 홈페이지의 구성 메뉴를 외국의 의회와 비교하여 본다면, 의회기록 정보서비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역사기록에 관한 안내 및 역사기록을 이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메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취약점이다. 국회기록보존소의 “보존소시스템”에는 비현용 기록물 가운데 행정기록물의 경우, 그 목록과 마이크로필름 목록, 이미지파일 등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것은 “보존소시스템”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른바 ‘헌정자료’라고 하는 국회역사기록을 수집, 관리하는 부서는 국회기록보존소인데, 헌정자료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헌정자료가 전시되고 있는 헌정기념관의 경우 헌정기념과 홈페이지([www.memorial.assembly.go.kr](http://www.memorial.assembly.go.kr))에서는 단지 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는 내용만을 볼 수 있다. 헌정자료를 뒷받침해 주는 자료인 구술기록, 조사 인터뷰 등과 같은 비공식 자료에 대한 수집,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보서비스로 제공되지 않는다.

국회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기록 정보서비스는 대체로 다양한 시스템은 갖추고 있으나, 기록관리학적인 관점에서 구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각 기록에 대한 기술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하나의 개별적인 정보로서, 건 단위로 제공되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기록에 관한 정보, 즉 기록의 생산 목적, 배경, 관련기록에 관해서는 정보를 알 수 없다. 둘째, 제공되는 기록의 확인과 검색에 필요한 안내도구, 즉 전자적 검

색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검색” 메뉴는 검색 안내를 위한 하위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검색 방식은 대단히 간단하다. 예를 들면, 해당 시스템 내에서 주어진 생산부서, 연도 등을 지정하고,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한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키워드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기록을 찾기 어렵다. 셋째, 각 시스템별로 검색만이 가능하고 시스템간의 통합적인 검색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텍스트 기록의 데이터베이스와 시청기록의 데이터베이스가 각 각 분리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관련 기록들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국회기록을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정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교육사이트인 “어린이, 청소년홈페이지”(꿈나무의회교실)에서는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 입법과정을 포괄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민주주의, 헌법, 국회, 국회의원에 관한 정보와, 의정연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법률 상식과 법안을 직접 입안, 처리하는 체험기회를 제공하며, 국회관련 사항을 정리(숙제도우미)하여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의회주요 기록인 의안, 회의록, 역사자료 등을 검색, 이용하는 방법, 교실이나 가정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안내 및 링크, 샘플 제공, 비디오 및 CD 제작 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 3. 3. 3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기록의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질문과 답변등 의사소통의 통로로 제공되는 “Contact Us”, FAQ와 같은 메뉴, 담당자 전자메일 주소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어떤

이용자가 어떤 기록을 어떻게 이용하며, 어떤 만족 또는 불만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보서비스 콘텐츠 및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제까지 검토한 3장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 쪽의 <표 2>와 같다.

## 4. 국회기록 인터넷 정보서비스 개선 방안

### 4. 1 접근정책의 수립

국회기록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행할 사항은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관한 명문화된 지침 또는 가이드 라인으로서 접근정책을 제정하는 일이다. 기록 정보서비스는 넓은 의미에서 기록관리정책의 한 부분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접근정책은 기록관리법과 정보공개법 및 국회정보공개규칙, 저작권법, 국회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접근에 대한 ALA-SAA 공동성명”(http://www.archivists.org/statements/alasaa.asp)을 숙지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접근 정책에는 정보서비스의 목적,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제시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한다면, (1) 소장기록을 제공하는 목적은 공공서비스이며, 제공하는 기록은 공공기록이라는 것과, 접근규칙을 준수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접근에 대한 어떤 제한 사항도 문서로 규정하여 신중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표 2〉 의회기록 정보서비스 현황 비교

국가별 의회기록 정보서비스 제공 웹사이트	접근정책	기록정보서비스 특징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미 상원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정보에 관한 접근 규정</li> <li>-인터넷 서비스 이용 규칙 및 정책</li> <li>-프라이버시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장자료(현용 및 준현용, 비현용 기록)의 이용에 관한 안내 및 온라인 목록 제공</li> <li>역사기록에 대한 안내 및 역사 기록을 이용한 2차자료 (가공정보) 제공</li> <li>심층조사 안내를 위한 유용한 사이트 링크</li> <li>의회기록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자료와 어휘집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ntact Us”</li> <li>-이용자가 기록에 관해 직접 문의할 전자 우편 주소 제공</li> <li>-이용자가 추가적 질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포맷 제공</li> </ul>
국립 기록청 의회 아카이브즈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회기록에 대한 접근 및 인용에 관한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현용 의회기록 및 의회기록에서 추출한 정보 제공</li> <li>- 다양한 검색도구</li> <li>- 특수기록물 목록(구술기록 등)</li> <li>- 타 기관에서 소장한</li> <li>의회기록의 알파벳 색인(기관별, 주별, 의원명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ntac Us”</li> <li>-이용자가 직접 문의할 전자우편 주소 제공</li> <li>-이용자의 추가적 질문, 조언, 불만을 제공할 수 있는 포맷 제공</li> <li>“FAQ”</li> <li>-조사 및 심층조사를 위한 검색 포맷 제공</li> </ul>
영국 의회 아카이브즈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자유법과 기록 관리 실무법규</li> <li>저작권과 이용</li> <li>기록의 제한적 이용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장자료(현용 및준현용, 비현용) 의 온라인 목록 제공</li> <li>핵심적인 역사기록은 이미지를 첨부하여 상세정보 제공</li> <li>심층조사 안내를 위한 유용한 사이트 링크</li> <li>의회기록 활용법 안내, 다양한 교육자료, 다양한 교육매체, 샘플, 어휘집 제공</li> <li>ISAD(G)를 적용한 기록물 기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ntac Us”</li> <li>-이용자가 직접 문의할 전자우편 주소, 팩스, 전화번호 제공</li> <li>-특정 주제에 대한 범위등을 조언</li> <li>“FAQ”</li> <li>-조사 및 심층조사를 위한 검색 포맷 제공</li> <li>기타 “Feedback About the Site”에서 이용자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수집</li> </ul>
한국 국회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공개 청구 안내</li> <li>인터넷정보를 포함한 국회기록 이용에 관한 규정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사기록에 관한 안내,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li> <li>검색도구, 리스트 없음</li> <li>이용방법, 다양한 매체의 교육자료, 샘플, 어휘집 제공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기록에 관해 문의 할 수 있는 주소, 메뉴, 포맷 등이 없음</li> <li>“Q&amp;A”는 국회기록에 관해서가 아닌, 국회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한 메일로 운영</li> </ul>

(2) 소장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또 소장물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준수해야 할 법률과 기타 법적, 윤리적 고려사항을 제공한다. (3) 소장기록물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오프라인상의 출판물, 복제물등의 제공을 안내해야 한다. (4) 인터넷 서비스 이용규칙을 통해 기록의 불법적 게재,

변조를 방지하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요건을 제시하여 이용자 정보 관리, 보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부칙으로서, 접근에 대한 모든 제한사항을 문서로 규정하여 신중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과 비공개 사유 해제시에 자료를 신속히 공개하기 위해 제한사항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이 접근정책은 모든 이용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명시하고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접근정책의 공식화 조치는 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인 기반이 된다.

#### 4. 2 기록 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선

정보서비스 이론과 외국의회 기록 정보서비스 프로그램 사례에 비추어 향후 국회기록 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회기록의 인터넷 정보서비스가 정보화 사업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국회기록관리의 한 단계라는 관점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 국회기록의 생산 당시부터 이용자, 수요자를 고려한 정보서비스의 개념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는 국회기록의 특성에 대한 분석과 여기에 기초한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정보서비스의 개념을 반영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이란, ① 국회기록의 목록 기술에 의해 해당 기록의 생산배경과 연원이 다른 관련 기록과의 관련성을 기재하여 기록의 식별 및 검색, 활용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기록의 목록기술은 기록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록이 생산된 배경정보 및 기타 관리정보를 종합화하는 정보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기록관리의 원칙인 출처주의, 원질서의 원칙, 계층통제, 집합적 기술, 중층적 기술 등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회기록의 특성과 국제기록물목록기술표준(ISAD(G))에서 권장하는 기술의 영역과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된다면 향후 공공기

관 간에, 그리고 국가적인 기록관리 네트워크 구축될 경우, 기록의 유통과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유용한 기반이 될 수 있다. ② 전자제어(Authority Control) 파일을 작성하여 검색시 연계되는 목록기술을 유지한다. 국회기록에 포함된 정당, 인명, 사건 등의 접근점을 통일시키고, 이형표현들과 연계시켜 정확한 검색과 재현율을 제고해야 한다. 전자제어의 단체와 개인의 배경정보를 기술하는 요소는 국제기록물표준전거규칙(ISAAR(CPF))의 전자레코드 기술요소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 (2) 이용자들이 주제와 이름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주제별, 인물별, 기능별, 형식별로 조직된 다양한 가이드, 인벤토리, 리스트 등 검색도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3) 문자, 비문자 자료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매체가 다른 기록간의 통합검색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4) 물리적 접근에 의해서만 이용이 가능한 소장 기록의 목록 및 등록부, 색인 등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이를 인터넷 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가이드를 편집하고 수시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국회 역사기록인 헌정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수량과 질적인 면에서 대단히 취약한 헌정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헌정자료에 정확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수집 등록 단계부터 목록기술 및 전자제어 파일이 축적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

#### 4. 3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활성화

국회기록에 접근하는 이용자가 기록 및 찾고

자 하는 정보를 찾지 못한 경우, 여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안내하거나 도움말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과 응답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회의 경우, "Contact Us", FAQs, 또는 해당 분야별로 또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도록 담당자와 전자우편 주소가 제공된다. 국회에서도 "Contact Us"를 개설하여 웹사이트에 게재된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나, 조언 등을 제공하고 안내해야 한다. 질문의 포맷을 제공하여 표준화된 질문응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즉답형이거나 서술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의사소통은 이용자 측에서 보면, 시간이 절약될 수 있는 반면 정확한 의사전달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제공자 측에서 보면, 이용자의 수나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량의 폭주, 질문범위와 수준의 다양성,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 질문 등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전자 파일로 링크되도록 하거나 별도의 참고파일로 편집해 놓으면 질문에 대해 신속히 답할 수 있다. 조사 및 심층 검색을 위해 주제별, 연대별, 형식별로 편집된 FAQs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자동화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정보서비스 환경하서는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의사소통은 이용자와 제공자가 직접적인 인간적인 교류에 의한 의사소통에 비하여 그 의미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용자의 이용습관, 선호하는 자료의 성격 등 이용자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기 어려운 자동화 환경에서는 이용자에게 대해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

되기 어렵게 된다. 정보서비스는 상호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용자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기록관리기관의 행정적 요구 사항도 충족될 수 있다. 즉 이러한 재투입 요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얼마나 성공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정보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용자 연구를 통해 다양한 이용자층의 다양한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용 패턴을 평가하고 이전의 이용경로를 추적함으로써 재투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용자의 요구를 신중히 다루고, 공평히 다루며 미래의 이용자에 대해 기록의 이용을 장려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 5. 맺음말

이제까지 국회기록의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여 왔다. 그 결론으로 국회기록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관한 접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 둘째, 국회기록의 인터넷 정보서비스는 국회기록관리의 한 단계라는 의미와 위치를 확보해야 하고, 국회역사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은 요건에 덧붙여 이를 추진할 협력체계의 구축이라는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기로 한다.

국회의 기록관리기관은 국회기록보존소로서 여기에서는 이른바 자료관의 역할과 역사자료의 소장 및 관리를 주업무로 한다. 한편 국회의

록의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주관하는 부서는 입법정보화담당관실로 여기에서 국회기록의 정보처리, 유통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용, 전자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을 총괄한다. 이와 같이 기록을 관리하는 부서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의 관리 및 정보서비스가 기록관리학적인 원칙 및 방법론에 의거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국회기록 인터넷 정보서비스는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학적 관리방식과 관련성이 없이 정보의 축적, 정보의 추출, 정보의 가공이라는 정보화사업의 관점에서 설계된

데이터베이스 및 접근 시스템으로 제공되고 있다. 국회기록에 대한 접근 규정, 기록관리학적인 목록관리, 기술 시스템, 기록의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안내, 관련 기록 및 기록관리 기관에의 링크 등의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기록 인터넷 정보서비스와 관련되는 기관 또는 부서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록관리학적인 관점에서 기록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인터넷 정보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제공 시스템 설계, 실행, 피드백 과정에 기록관리학적인 원칙과 방법론이 적용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Pugh, Mary Joe (설문원 역). 2004. 『기록정보서비스』, 서울: 진리탐구.
- Bellardo, Lewis and Bellardo, Lynn Lady. 1991. *A Glossary For Archivists, Manuscript Curators, and Records Manager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1.
- Conway, Paul. 1986. "Fact and Frameworks: an Approach to Studying the Users of Archives." *American Archivist*, 49(Fall): 395, 396
- Dowler, Lawrence. 1988. "The Role of Use in Defining Archival Practice and Principles: A Research Agenda for the Availability and Use of Records." *American Archivist*, 51 (Winter and Spring): 78.
- Hensen, Steven L. 1986. "The Use Standards in the Application of the AMC Format." *American Archivist*, 49(Winter): 31-40.
- Robbin, Alice. 1986. "State Archives and Issues of Personal Privacy : Policies and Practices." *American Archivist*, 49(Spring): 351.
- Sigrid, McCausland. 1993. "Access and Reference Services". Judith Ellis(ed), *Keeping Archives*, ASA inc: 275-279.